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46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장동혁·조배숙·곽규택

박덕흠 • 유상범 • 구자근

인요한 • 박준태 • 김태호

서범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 거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어 왔으나, 도입 이후에 사전 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음.

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,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이에,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,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, 선거 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 율 저하를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.
 - 1)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(거소·선상투표신고자 제외)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).
 - 2) 구·시·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,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(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).
 - 3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 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(안 제44조의2).
 - 4) 부재자투표소는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,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함(안 제148조제1항).
 - 5)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(안 제148조제1항, 제158조 등).
 - 6)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(안 제155조제2항).
 - 7)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신설).

- 8)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 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 록 함(안 제176조제5항 신설).
- 나.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(안 제44조의2, 제148조, 제158조 등).
- 다. 선거일을 1일간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3일간으로 연장함 (안 제34조, 제35조제2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"사전투표기간"을 "부재자투표기간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수요일"을 각 "금요일, 토요일 및 일요일"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·단서·나목 및 다목 중 "수요일"을 각각 "금요일, 토요일 및 일요일"로 한다.

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선거일의 기준) ① 이 법에서 "선거일 전"이란 선거일의 첫째 날 전을 말한다.

- ② 이 법에서 "선거일 후"란 선거일의 셋째 날 후를 말한다.
- ③ 이 법에서 "선거일 현재"란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를 말한다.
- ④ 이 법에서 "선거일까지"란 선거일 셋째 날까지를 말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부재자투표신고)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(제1

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·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)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·시·군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신고(이하 "부재자투표신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, 그 우 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-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1. 부재자투표 사유
- 2. 성명, 성별, 생년월일
- 3. 주소. 거소
-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·시·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(이하 "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라 한다)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구·시·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(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) 1통을 관할구·시·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.
-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,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, 부재자투표 사유의 확인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규칙으로 정한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·같은 조 제4항제1호·제4호 및 제5호 중 "사전투표소"를 각각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選擧人名簿(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"를 "선거인명부(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 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"를 "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"로 한다.

제44조의2의 제목 중 "통합선거인명부"를 "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, "선거인명부의"를 "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"로, "하나의 선거인명부(이하 "통합선거인명부"라 한다)"를 "하나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(이하 "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통합선거인명부"를 각각 "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사전투표기간"을 "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통합선거인명부"를 "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로 한다. 제45조제1항 본문 중 "選擧人名簿(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"를 "선거인명부(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표신고인명부"를 "제37조의2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재자투표신

고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"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"選擧人名簿 또는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"를 "선거인명부,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"로 한다.

제58조의2제2호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60조제2항 전단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한다.

제65조제5항 전단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122조의2제3항제6호·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"사전투표참 관인"을 각각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한다.

제146조의2의 제목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각각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각각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한다.

제148조의 제목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(이하 "사전투표기간"이라 한다)"을 "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(이하 "부재자투표기간"이라 한다)"으로,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군부대 밀집지역"을 "군부대 및 대학 밀

집지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·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사전투표소"를 각각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사전투표소"를 각각 "부재자투표소"로, "사전투표사무원"을 각각 "부재자투표사무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"를 "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,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소가로,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사무원"으로 한다.

제151조제3항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, "사전투표함"을 "부재자투표함"으로, "사전투표자수"를 "부재자투표신고인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"사전투표소에서"를 "부재자투표소에서"로, "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155조제2항 전단 중 "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"을 "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"으로,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, "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함"으로,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사전투표"를 "부재자투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"사전투표소(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

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"를 "부재자투표소(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부재자투표소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"로 한다.

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 단서"를 "제4항 단서"로 한다.

-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.
-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·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제158조의 제목 "(사전투표)"를 "(부재자투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사전투표를"을 "부재자투표를"로,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은"으로, ""사전투표관리관"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이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전

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기간"으로, "사전투표마감"을 "부재자투표마감"으로, "또는 사전투표기간"을 "또는 부재자투표기간"으로,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"사전투표함"을 "부재자투표함"으로, "사전투표자수"를 "부재자투표자수"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각각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, "사전투표참관인"을 각각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, "사전투표참관인"을 각각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"사전투표함"을 각각 "부재자투표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사전투표점차"를 "부재자투표점차"로 하다.

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.

제162조의 제목 "(사전투표참관)"을 "(부재자투표참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"를 "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전투표소별"을 "부재자투표소별"로,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, "사전투표기간"을 "부재자투표소에서"를 "부재자투표소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"를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각각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각각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사전투표참관"을 "부재자투표참

표참관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 관리관"으로,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"를 "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"로 한다.

제163조제4항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164조제4항 전단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, "사전투표사무워"으로 한다.

제165조제2항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166조제5항 전단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,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소 안에서"를 "부재자투표소 안에서"로 하다.

제166조의2제2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한다.

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"사전투표"를 각각 "부재자투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·제3항 중 "사전투표함"을 각각 "부재자투표함"으로 하 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사전투표함"을 "부재자투표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

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전투표"를 "부재자투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212조의 제목 중 "사전투표"를 "부재자투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213조제3항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한다.

제215조제1항 단서 중 "사전투표"를 "부재자투표"로 한다.

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"사전투표기간"을 "부재자투표기간"으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"사전투표 및 거소투표"를 "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"로 한다.

제230조제1항제1호 중 "사전투표참관인"을 "부재자투표참관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한다.

제242조제1항제1호 중 "사전투표소"를 "부재자투표소"로 한다.

제244조제1항 중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사무원"으로 한다.

제248조제2항 중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사무원"으로 한다.

제249조제2항 중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사무원"으로 한다.

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"사전투표사무원"을 "부재자투표사무원"으로 한다.

제277조의2제1항 중 "사전투표관리관"을 "부재자투표관리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	제6조의2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
람의 투표시간 보장) ① 다른	람의 투표시간 보장) ①
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<u>사전투</u>	<u></u> 부재자
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	투표기간
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	
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	
게 청구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후보자 등의 신분보장) ①	제11조(후보자 등의 신분보장) ①
• 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선거사무장・선거연락소장	3
·선거사무원·회계책임자·투	
표참관인· <u>사전투표참관인</u> 과	<u></u> 부재자투표참관인
개표참관인(예비후보자가 선임	
한 선거사무장・선거사무원 및	
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)은 해	
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	
종료시까지 사형・무기 또는	
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	
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	
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	
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	
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	

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,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.

제12조(선거관리) ① 中央選擧管 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 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 統轄·관리하며, 하 급선거관리위원회(투표관리관 및 <u>사전투표관리관</u>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제21 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 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 투표관리관의 違法・부당한 처 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- 第34條(選擧日) ① 任期滿了에 의 설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 와 같다.
 - 1. 大統領選擧는 그 任期滿了日 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
 - 2. 國會議員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 이후 첫번째 <u>수요</u>일
 - 3.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

 제12조(선거관리) ①
<u>부재자투표관리관</u>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第34條(選擧日) ①
 1
<u>금요일,</u> <u>토요일 및 일요일</u>
2 <u></u>
<u>일, 토요일 및 일요일</u> 3

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<u>수</u>요일

-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 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擧日前日이나 그 다음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.
- 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 ① (생 략)
 - ② 보궐선거·재선거·증원선 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 지·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의
 보궐선거·재선거 및 지방의
 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
 회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
 장의 보궐선거·재선거는 매
 년 2회 실시하되,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. 이 경우
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<u>-</u>
요일, 토요일 및 일요일
②
금요일, 토요일 및 일요일
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 ①
(현행과 같음)
②
,
1

- 가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
 의 보궐선거·재선거 및
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
 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
 실시한다. 다만, 3월 1일
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
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
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
 한다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·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<u>수요일</u>에 실 시한다.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·재선거 중 3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 월 첫 번째 <u>수요일</u>에 실시 한다.
- 2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가
금요일, 토요 일 및 일요일
<u>금요일, 토요</u> <u>일 및 일요일</u> 나
금요일, 토요 일 및 일요일 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6조의2(선거일의 기준) ① 이
법에서 "선거일 전"이란 선거
일의 첫째 날 전을 말한다.

<신 설>

- ② 이 법에서 "선거일 후"란
 선거일의 셋째 날 후를 말한다.
 ③ 이 법에서 "선거일 현재"란
 선거일의 첫째 날 현재를 말한다.
 다.
- ④ 이 법에서 "선거일까지"란 선거일 셋째 날까지를 말한다. 제37조의2(부재자투표신고) ①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(제15조제2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 에 따라 거소・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)은 선거인 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·시 ·군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(이하 "부재자투표신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 로 처리하되, 그 우편요금은 국 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 -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

-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- 1. 부재자투표 사유
- 2. 성명, 성별, 생년월일
- 3. 주소, 거소
-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·시·군의 장은 해당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(이하 "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"라 한다)를 따로 작성하여야한다.
- ④ 구·시·군의 장은 부재자 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 는 즉시 그 등본(전산자료 복 사본을 포함한다) 1통을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 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 용한다.
-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,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, 부재자투표 사유의 확인절차,

- 제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 ① 저 (생 략)
 -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 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 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 의 장에게 서면[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 시밀리(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로 신고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]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신고(이하 "선상투표신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 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 - 1. · 2. (생략)
 - ③ (생 략)

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세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 ①
(현행과 같음)
2
<u></u> 부재자투표소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(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)에서 투표할 수 있다.
- 1.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<u>사전투표소</u> 및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(營內)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자
- 2. · 3. (생략)
- 4. <u>사전투표소</u>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점에 거주하는자
- 5. <u>사전투표소</u> 및 투표소를 설 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 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.・6. (생 략)
- ⑤ ~ ⑧ (생 략)
- 第39條(名簿作成의 監督 등) ① 第39條(名簿作成의 監督 등) ① 選擧人名簿(거소・선상투표신 전거인명부(부재자투표신고인 고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명부 및 거소・선상투표신고인

4
1
<u></u> 부재자투표소
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부재자투표소</u>
5. <u>부재자투표소</u>
5의2. · 6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第39條(名簿作成의 監督 등) ①
선거인명부(부재자투표신고인

條에서 같다)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·市·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.

② ~ ⑨ (생 략)

제44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,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

②·③ (생 략)

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<u>사전</u> <u>투표소</u>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 정된 <u>선거인명부의</u> 전산자료 복 사본을 이용하여 <u>하나의 선거인</u>

제44조의2(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)

명부(이하 "통합선거인명부"라 한다)를 작성한다.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<u>통합</u>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
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

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
<u>서 같다)</u>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제44조(명부의 확정과 효력) ①
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
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2(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
<u>부</u> 의 작성) ① <u></u> 부재
자투표소
<u></u>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
<u>하나의 부재자</u>
투표신고인명부(이하 "통합부재
자투표신고인명부"라 한다)
② <u>통합</u>
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
③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-

을 이용하여 작성한다.

④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<u>사</u> 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 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 력한 다음 해당 읍·면·동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 ·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당추천위 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 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 으로 본다.

- ⑤ (생략)
- ⑥ <u>통합선거인명부</u>의 작성,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第45條(名簿의 再作成) ① 천재지 변, 그 밖의 事故로 인하여 選 學人名簿(거소・선상투표신고

4
<u>-</u> -
재자투표기간
 (주 / 키 키 기 이)
⑤ (현행과 같음)⑥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-
<u> </u>
· 945條(名簿의 再作成) ①
<u>선</u>

인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條 에서 같다)가 멸실·훼손된 경 우 選擧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구·시·군의 장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8조제6항에 따 라 송부한 거소·선상투표신고 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(생 략)

제46조(명부사본의 교부) ① 구· 시·군의 장은 候補者[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(비례대표시·도 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·시· 군의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후 보자를 제외한다]·선거사무장 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 거사무장을 제외한다) 또는 選 學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 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 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

<u>무 및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</u>
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
<u>같다)</u>
<u>제37</u> 조의2제4항 및
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
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・
선상투표신고인명부
② (현행과 같음)
제46조(명부사본의 교부) ①
<u>선거인명부,</u> 부재
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ㆍ
선상투표신고인명부

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- 제58조의2(투표참여 권유활동) 누 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사전투표소</u> 또는 투표소로부 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.·4. (생 략)
-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 (생 략)
 -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·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·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제6 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 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<u>사</u> 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(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 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

•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8조의2(투표참여 권유활동)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부재자투표소
3. · 4. (현행과 같음)
,
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
자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부</u>
재자투표참관인

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 그 직을 그만두 어야 하며, 선거일 후 6월 이내 (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)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수 없다.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 조제4항을 준용한다.

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④ (생략)

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 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 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 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 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대장 · 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 일까지 소속 군인 · 경찰공무원 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65조(선거공보) ① ~ ④ (현행
과 같음)
⑤ <u>부재자투표소</u>
<u>.</u>

- ⑥ ~ ⑭ (생 략) 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 등) 저
 - ① · ② (생 략)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부담한다. 이 경우 제3호의2 및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第161條(投票參觀)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 에 따른 <u>사전투표참관인</u>의 手 當과 식비
 - 7. (생략)
 -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 관인 및 <u>사전투표참관인</u> 수당 은 10만원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 은 10만원으로 한다.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<u>사전투표참관인</u> 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 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 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에게만 지급한다.
 - ⑤ (생략)

⑥ ~ ⑭ (현행과 같음)
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 등)
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부재자투표참관인</u>
7. (현행과 같음)
4
,
부재자투표참관
<u>인</u>
⑤ (현행과 같음)

- 제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<u>사전</u> 저 <u>투표관리관</u>) ① 구·시·군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, <u>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</u> 관 1명을 각각 둔다.
 -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 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.
 - ④ 투표관리관 및 <u>사전투표관</u> 리관의 위촉 및 해촉,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48조(<u>사전투표소</u>의 설치) ① 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

ll 146조의2(투표관리관 및 <u>부재</u>
자투표관리관) ①
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
관리관
② <u></u> 부재자투표
관리관
부재자투표관리관
③
<u>부</u>
재자투표관리관
④ <u></u> 부재자투표
관리관
ll 148조(<u>부재자투표소</u> 의 설치) ①
선거일 전 4일부터 2일 동안

(이하 "사전투표기간"이라 현
<u>다)</u> 관할구역(선거구가 해당 구
·시·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
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
다)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 ^쓰
<u>사전투표소</u> 를 설치·운영하여
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
는 해당 지역에 <u>사전투표소</u> 를
추가로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1 수 뭐 드 키윈그션게 그는

- 1. 읍·면·농 관할구역에 <u>군부</u> <u>대 밀집지역</u> 등이 있는 경우 2.·3. (생 략)
- 4.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<u>사전투표소</u>를 추가로 설 치·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 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
- 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<u>사전투표소</u>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·소재지 및 설치·운영기간을 공고하고,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관할구

(이하 "부재자투표기간"이라 한
다)
부재자투표소
<u></u> 부재자투표소
1 <u>군부</u>
대 및 대학 밀집지역
2.・3. (현행과 같음)
4
부재자투표소
②

- 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. <u>사</u> 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<u>사전</u>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사전투표사무원</u>을 두어야 한다.
- ④ <u>사전투표소</u> 설치 장소의 제한·사용협조, 설비, <u>사전투표</u> <u>사무원</u>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하다.
-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<u>사전</u> <u>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</u>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, 정보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<u>사전투표소</u>의 설치·공고·통보 및 <u>사전투표사무원</u>의 위

<u></u>
<u> 재자투표소</u>
③
자투표소
부재자투표사무원
④ <u>부재자투표소</u>
부재자투
표사무원
⑤
자투표소에서 통합부재자투표
<u>신고인명부</u>
<u>.</u>
⑥ <u>부재자투표소</u>

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.
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성) ①·② (생 략)

③ <u>사전투표소</u>의 투표함(이하 "<u>사전투표함</u>"이라 한다)과 郵便 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(이하 "郵便投票函"이라 한다)은 따로 작성하되, 그 數 는 예상 <u>사전투표자수</u> 및 거소 투표신고인수·선상투표신고인 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·市· 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.

④·⑤ (생 략)

⑥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한다.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(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)의형태로 표시하여야하며, 바코

.
제151조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
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부재자투표소</u>
<u> 부재자투표함</u>
부재자투표신고인수
④·⑤ (현행과 같음)
6
부재자투표소에서
부재자투표관리관이
부재자투표소
·

드에는 선거명, 선거구명,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 아서는 아니 된다.

⑦ ~ ⑨ (생 략)

第155條(投票時間) ① (생 략)

- ② <u>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</u>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,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<u>사전투표소</u>는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.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<u>사전투표소</u>에 이를 準用한다.
- ③ (생략)
- ④ <u>사전투표소</u>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<u>사전투표관리관</u>은 <u>사전투표함</u>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查하여야 하며, 이에는 <u>사전투표참</u> 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</u>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가신시각하지 아니한

<u>.</u>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第155條(投票時間) ① (현행과 같
$\frac{\diamond}{\Box}$)
②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
<u>기간</u>
<u></u> 부재자투표
<u>소</u>
<u></u> 부재자투표소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부재자투표소</u>
<u></u> 부재자투표관리
관은 부재자투표함
부재자투표
<u> </u>
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
자투표참관인

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 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 여야 한다.

- ⑤ <u>사전투표</u>·거소투표 및 선 상투표는 選擧日 오후 6시(보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 시)까지 管轄區·市·郡選擧管 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.
-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 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)에 열 고 오후 7시 30분(보궐선거등 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)에 닫으며, 사전투표소(제148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 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 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 다)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. 다만.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, 격리자등

⑤ <u>부재자투표</u>
6
부재자투표소(제148조
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
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하고 부재
자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부재
자투표소에 한정한다. 이하 이
<u>항에서 같다)</u>
<u>.</u>

의 수,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 략)

第156條(投票의 제한) ①・②(생 第156條(投票의 제한) ①・②(현 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 <신 설>

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 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 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 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

- (7) · (8) (현행과 같음)
- 행과 같음)
 -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 다. 다만, 부재자투표기간에 투 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 다.
 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 -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 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 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 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 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 표자의 명단과 대조 ·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 을 적어야 한다.
 - ⑥ 제4항 단서-----

표자의 명단과 대조·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 을 적어야 한다.

- 제158조(사전투표) ① 선거인(거 / 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 한다)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 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.
 -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③ <u>사전투표관리관은</u>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"<u>사전투표관리관"</u>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

<u>.</u>
제158조 <u>(부재자투표)</u> <u>① 부재자투</u>
표신고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은
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
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.
② <u>부재자투표를</u>
<u> 부재자투표소</u>
③ 부재자투표관리관은
"부재자투표관리관"

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 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 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 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 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 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 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.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 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 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 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

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

,
4
<u></u> 부재자투표
<u>하</u>
5
부재자투표관리관
⑥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
투표기간부재자투표
마감또는 부재자투표기간-
부재자투표참관인
1

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 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.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,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.

- 2.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<u>사전투표함</u>을 직접 관할 구·시·군선거 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. 이 경우 <u>사전투표함</u>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.
-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<u>사전투표절차</u>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⑦ (생략)

<u>부재자투표함</u> 부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
· 부재자투표관리관
<u>부재자투표참관인</u>
<u>부재자투표관리관</u>
<u></u> 부재자투표참관인
<b>.</b>
2
2
2
2 
2
2
2.
2.
2.
2.

제162조(사전투표참관) ① 사전투 제 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 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 관하게 하고, 제158조제6항제1 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. ② 정당·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 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·시·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 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.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, 제2항에 따라 선정・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 · 시 •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표참관인으로 한다. 이 경우 후 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

제162조 <u>(부재자투표참관)</u> ① <u>부재</u>
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
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
,
②
<u>부재자투표소별</u> <u>부재</u>
자투표참관인
<u> 부재자투표기간부재자투</u>
표소에서
③ <u>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</u>
<u>투표소마다</u>
<u></u> 부재자
<u>투표참관인</u>

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,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·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<u>사전투표참관</u> 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 가 선정한 <u>사전투표참관인</u>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·시·군선 거관리위원회가 選擧權者중에 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<u>사전</u> 투표참관인으로 한다.
- ⑤ <u>사전투표참관</u>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"는 "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"는 "관할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"로, "투표관리관"은 "<u>사전투표관리관</u>"으로, "투표참관인"은 "사전투표참관인"으로 본다.
- ⑥ <u>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</u>의 서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

④
관인
부재자투표참관인-
<u>부재</u>
자투표참관인
⑤ 부재자투표참관
<u></u> 부재자
<u> 투표관리관</u>
부재자투표참관인
⑥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

한다.

- 第163條(投票所 등의 出入制限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<u>사전투표소</u>(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)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第164條(投票所 등의 秩序維持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<u>사전투표소</u>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투표관리관"은 "<u>사전투표관리</u> 관"으로, "투표사무원"은 "<u>사전</u> 투표사무원"으로 본다.
- 第165條(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)①(생 략)
  - ② <u>사전투표소</u>(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)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- 第166條(投票所內外에서의 騒亂 言動禁止 등) ① ~ ④ (생 략)

第163條(投票所 등의 出入制限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부재자투표소</u>
<u>.</u>
第164條(投票所 등의 秩序維持)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부재자투표소</u>
<u></u> 부재자투표관
리관부재
자투표사무원
第165條(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
禁止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부재자투표소</u>
·.
第166條(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
言動禁止 등) ① ~ ④ (현행과
간음)

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
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
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
용한다. 이 경우 "투표관리관"
은 " <u>사전투표관리관</u> "으로, "투
표사무원"은 " <u>사전투표사무원</u> "
으로, "선거일에"는 " <u>사전투표</u>
<u>소 안에서</u> "로 본다.

- 제166조의2(투표지 등의 촬영행 위 금지) ① (생 략)
  - ② 투표관리관 또는 <u>사전투표</u> 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.
- 제176조(<u>사전투표</u>·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 ① 區 ·市·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 便으로 송부된 <u>사전투표</u>·거소 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 에는 당해 區·市·郡選擧管理 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·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②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
⑤ <u>부재자투표소</u>
<u></u> 부재자투표관리관
<u></u> 부재자투표
<u>소 안에서</u>
제166조의2(투표지 등의 촬영행
위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</u> 부재자투
표관리관
제176조( <u>부재자투표</u> ·거소투표
및 선상투표의 접수·개표) ①
<u></u> 부재자투표
②

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·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<u>사전투표함을</u>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,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<u>사전투표함</u>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 오후 6시(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)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.

<신 설>

<u>부재자투표함</u>
3
<u>부재자투표함</u> -
,
4
<u>부재자투표함</u>
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
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
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
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

⑤ (생략)

제179조(무효투표) ① (생략)

- ② <u>사전투표</u>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 로 한다.
- 1. 2. (생략)
- ③ (생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.
- 1. ~ 9. (생략)
- 10. <u>사전투표소</u>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
- 제212조(거소투표·<u>사전투표</u>의 지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)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.

지보고 취사되지지 되다
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179조(무효투표) ① (현행과 같
<u>수</u> )
② <u>부재자투표</u>
 1.·2. (현행과 같음)
, _ , .
③ (현행과 같음)
4
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부재자투표소</u>
제212조(거소투표・ <u>부재자투표</u> 의
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
한 특례)

1. (현행과 같음)

- 2. <u>사전투표소</u>에서 투표한 선거 2. <u>부재자투표소</u>-----인의 투표지 회송 -----
- 第213條(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) ①・② (생 략)
  - ③ 동시선거에서 <u>사전투표참관</u> 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 정·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 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 人을,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 정·申告하여야 한다.
  - ④ 同時選擧에 있어서 <u>사전투</u> <u>표참관인</u>은 8명 이내로 하되,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· 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·申告한 者를 우 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 소속후보자가 선정·申告한 者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 籤에 의하여 지정한다. 이 경우 政黨이 선정·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 이 선정·申告한 者부터 8명에

第213條(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
등에 관한 特例) ①・② (현행
과 같음)
③부재자투표참관
<u>인</u>
<u>.</u>
④ <u></u> 부재자투
<u> 표참관인</u>

달할 때까지 지정한다. 第215條(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)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(開票參 觀)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 ・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 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.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・ 申告하여야 한다. 다만, 區・市 ・郡選擧管理委員會는 거소투 표 ·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・申告한 者중에 서 政黨은 4人씩을, 무소속후보 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. ② (생 략)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 려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 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· 관리

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대통

第215條(開票參觀人	등에	관한
特例) ①		
<u>.</u>		
	-부재자	투표-
② (현행과 같음)		•
제218조의4(국외부재	자 시고	<u>1</u> ) ①

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 "국외부재자 신고기간"이라 한다) 서면・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・시・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한다.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-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 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 지 대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제7호·제10호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전투표 및 거소투표"는 "재외투표"로, 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는 "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"로, "거

1. <u>부재자투표기간</u>
0 /처체기 가 O \
<ol> <li>(현행과 같음)</li> <li>(호행과 같음)</li> </ol>
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
<u></u> 부재자
<u> </u>

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" 는 "재외선거인등이"로, "거소 투표 또는 선상투표"는 "재외 투표"로 본다.

## ②・③ (생 략)

- 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 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 的으로 선거인(선거인명부 또 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 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의 선거사무장 · 선거연락소장 · 선거사무원 · 회계책임자 · 연 설원(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 · 대담을 하는 사람 과 제81조제1항 · 제82조제1항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
1

또는 제82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라 대담·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참관인(투표 참관인·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. 이하 이장에서 같다)·선장·입회인에게 金錢·物品·車馬·饗應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제공을 약속한 者

- 2. ~ 7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⑤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・직원(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(선장을 포함한다)이나 警察公務員(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)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.

⑥ ~ ⑧ (생 략)

<u>부</u> 재자투표참관인
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色 % 升 を 音)
5
5
⑤
⑤
⑤
⑤
⑤
⑤
⑤
⑤
⑤
⑤
⑤
⑤

- 제242조(투표·개표의 간섭 및 제 방해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 - 1.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투표소(재외투표소·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사람 또는투표소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권유하거나투표를공개하는등투표 또는개표에 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사람
  - 2. (생략)
  - ② · ③ (생 략)
- 第244條(選擧事務管理關係者 施設등에 대한 暴行·攪亂罪)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 원, 공정선거지원단원·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, 투표사무원 ·<u>사전투표사무원</u>·개표사무원,

242조(투표•	개표	E의	간섭	및
방해죄) ①				
			•	
1				
			<u>부</u>	재자
<u>투표소</u>				
2. (현행과 길	<b>날음</b> )			
②·③ (현행	과 :	같음)		
244條(選擧	事務	管理	關係す	皆나
施設등에 다	l 한	暴行	・攪胬	し罪)
<ol> <li></li> </ol>				
부재자투표	E사-	무워		

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 하는 자를 暴行・脅迫・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・監禁하거 나,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 票所・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소(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.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) 를 騷擾・교란하거나, 投票用紙 投票紙・投票補助用具・電算 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와 관련한 시설·설비·장비· 서류 ·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 (거소·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)를 은닉・손괴・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 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 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.

## ② (생략)

第248條(詐偽投票罪) ① (생 략)

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・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(投票事務員・사전투표

② (현행과 같음)
第248條(詐偽投票罪) ① (현행과
같음)
②
부재자투표

<u>사무원</u>	및	開票	事務	兵員을	포함
한다)이	第	1項에	規	定된	행위
를 하거	나 :	하게	한	때에는	- 7年
이하의	懲役	'에 處	₹한I	<b>구</b> .	

第249條(投票偽造 또는 增減罪)

- ① (생 략)
-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・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(投票事務員・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)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.

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
- ① ~ ⑦ (생 략)
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- 1. · 1의2. (생략)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

가. ~ 마. (생 략)

바. 제147조제9항, 제148조제 3항 또는 제174조(개표사

<u>사</u> ·	무원							
		投票			또는	<u>-</u>	增	减罪
		행과 						
2								
		- – – -			1	<b>부</b> ス	내자	·투 _조
사-	무원							
	ı <b>-</b> 7 / :	)II	A)	1	ıı		-1 L	<u> </u>
		과태 ⑦ (						<del>·</del> 등
(8)		<i>()</i> (		·				
1.	1의	2. (	현행	과	같	음)		
2.								
-							- O \	
	가. ^		 }. (द्	현 형	뱅과	깉		)

무원)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투표사무원·<u>사전투표</u> <u>사무원</u> 또는 개표사무원으 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 부·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. ~ 6. (생 략)

⑨ ~ ⑫ (생 략)

제277조의2(질병·부상 또는 사 명에 대한 보상) 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 원회위원, 투표관리관, 사전투 표관리관, 공정선거지원단원, 투표 및 개표사무원(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)이 선거기간(공 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 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)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·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<u></u> 부재자투표
사무원
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 ⑨ ~ ⑫ (현행과 같음)
제277조의2(질병·부상 또는 사
망에 대한 보상) ①
부재자
투표관리관
<u>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
② ~ ⑥ (현행과 같음)